

예 산 총 칙

2018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11,194,563	12,335,837
일반회계	395,103,617	11,853,109
특별회계	16,090,946	482,728
기타특별회계	16,090,946	482,728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945,500	28,365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,596,793	47,904
주차장특별회계	12,482,735	374,482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622,231	18,667
재정비축진특별회계	443,615	13,308
기반시설특별회계	72	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'명시이월사업조서'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,088,216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금후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(국·시보조금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등)과 상급기관 공문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